

제주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42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429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가소12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2. 12. 14.

판결 선고 2023. 2. 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가소1240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3,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70,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28.부터 2020. 10.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 영업을 권리금 68,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20. 10. 19.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2020. 11.

17.경까지는 원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매출액도 원고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의 2020. 10. 19.부터 2020. 11. 17.까지 매출액은

13,339,000원이고, 원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외상을 준 금액 3,420,000원에서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10일) 1,280,000원을 공제하면 2,140,000원이다1)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받았으나, 주급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99,000원(= 13,339,000원 ~ 2,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은 10,858,000원인데, 피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매출액은 9,772,200원(= 10,858,000원 ~ 1,085,8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6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가불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25. 1,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7,290,000원 상당의 외상을 주었는데, 2020. 9. 24. 1,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29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72,200원(= 매출액 9,772,200원 + 미지급 임금 1,600,000원)에서 8,290,000원(= 가불금 2,000,000원 + 외상대금 6,290,000원)을 공제한 3,082,200원을 지급하면 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2020. 10. 19.부터 2020. 11. 12.까지의 매출액은 12,9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 위 금액에서 피고가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11,791,818원(= 12,971,000원 ÷ 1.1,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60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3,391,818원(= 매출액 11,791,818원 + 임금 1,600,000원)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가불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6. 25. 피고에게 가불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가불금을 주급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금액이 3,42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순외상대금이 6,2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금액이 3,42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5,420,000원(= 가불금 2,000,000원 + 외상대금 3,420,000원)이다.

다. 소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971,818원(= 13,391,818원 ~ 5,420,000원) 및 그 중 ① 제1심에서 인용된 3,228,1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743,6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2,948,18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건

판사정가원

판사이선호

1) 원고는 제1심법원의 2021. 3. 30.자 변론기일에서 "2,140,000원이란 원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손님에게 외상을 준 돈에서 원고가 받지 못한 일당 열흘치를 공제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2021. 3. 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외상대금은 3,42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280,000원으로 보인다.

2) 갑 제1호증의 왼쪽 합계표 금액 2,061,000원과 오른쪽 매출 집계표 금액 10,910,000원을 합한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13,339,000원은 갑 제1호증의 취소금액 368,000원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10,558,000원은 2021. 4. 21.자 피고 답변서 별지3 표에 의하면 2020. 10. 20.부터 2020. 11. 9.까지의 금액으로 보인다.